종 합 감 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5년 남부건설사업소 종합감사 -

2025. 7.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 처분요구일람표

1. 계약해지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미이행 부적정 (시정) ···· 1

2.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설정 소홀(시정) ····· 3

3. 건설공사 계약(면허) 부적정(주의) ····· 5

4. 기간제근로자 소득세 납부 업무 부적정(통보) ····· 7

5. 기간제근로자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 9

6. 포장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부적정(주의) ····· 12

7.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등 부적정(주의) ····· 15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해지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미이행 부적정
소 관 청	남부건설사업소
관 계 부 서	@@@
내 용	

남부건설사업소 @@@에서는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및 지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하며,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입 조치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같은법 제30조의2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법 제31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알 수 있도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날까지 각 호의 사항[1]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하며,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2]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계약후 귀책에 의하여 계약포기서 제출로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 하여 계약 계약해지 할 경우 계약보증금은 세입조치 하고, 부정당업자로 등록 하여 입찰참가 가격을 제한을 하여야 하며, 해당 업체가 폐업을 하였더라도, 대표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남부건설사업소 @@@에서는 ▽▽▽▽▽공사 계약상대자의 계약포기서 제출 등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되었음에도 계약보증금 0,000,000원을 세입조치 하지 않았으며,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

조치할 사항 남부종합건설사업소장은

① 지방0000 ∞∞∞ 대하여는「경상북도 자체감사 규칙」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주의** 처분 하였으며,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②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시정)

---

1) 1. 입찰 참가자격 제한자의 업체(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 2.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4.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2)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자로 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설정 소홀
소 관 청	남부건설사업소
관 계 부 서	■■■
내 용	

남부건설사업소 ■■■에서는 금전, 물품, 기타 재산 등의 출납과 보관·관리 등의 회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르면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1]에는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계공무원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으며,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회계관리과에서는 2024. 10. 18.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요청 공문을 전 부서에 통보[3]하였다.

따라서, 남부건설사업소에서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정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한 후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남부건설사업소에서는 0000.0.0.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징수관, 분임징수관, 재무관, 분임재무관, 채권관리관 등의 회계관계공무원이 재정보증을 가입하지 않은 채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남부건설사업소장은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②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재정보증 설정 등을 하기 바랍니다. (시정)

3)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관련 변경자료 제출 요청 (회계관리과-00000, 2024.10.18.)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공사 계약(면허) 부적정
소 관 청	남부건설사업소
관 계 부 서	△△△, ◎◎◎◎◎◎
내 용	

남부건설사업소에서는 도민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업종에 적합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도로 유지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르면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르면 경미한 건설공사의 범위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로 되어 있다.

따라서, 남부건설사업소는 1,500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별표1]에서 규정한 건설업 업종에 적합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남부건설사업소 ◎◎◎◎◎◎에서는 해당 업체가 차선정비공사에 필요한 도장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부적합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계약부서로 수의계약 체결을 요청하였고, △△△에서는 면밀한 검토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별표1]에서 규정한 건설업 업종에 적합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조치할 사항 **남부건설사업소장**은

지방0000 ▲▲▲, 지방00000 ▰▰▰에 대하여 「경상북도 자체감사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주의** 처분하였으며,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통 보

제 목	기간제근로자 소득세 납부업무 부적정
소 관 청	남부건설사업소
관 계 부 서	§§§, ◀◀◀◀◀
내 용	

남부건설사업소에서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등 업무 보조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를 사역 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7조제1항과 제128조제1항에 따르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남부건설사업소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사역에 따른 보수 지급시 소득세 등을 원천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0000년부터 0000년까지 기간제근로사역에 따른

보수 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 없이 보수를 지급하는 등 세금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남부건설사업소장**은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② 국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 소득세에 대하여 국세청에 수정 신고· 납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통보)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남부건설사업소
관 계 부 서	▤▤▤, ◈◈◈◈◈
내 용	

1. 채용서류 반환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미이행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에서는 청사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하며, 구인자는 구직자의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일정한 기간 채용서류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며, 「채용절차법」 제11조 제4항에는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채용절차법 시행령」 제4조에는 반환의 청구 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며 이 경우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가 정한 채용서류의 반환청구 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개인정보보호법」제21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유 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2호에는 전자적 파일 형태를 제외한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채용서류(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주민등록 등본, 자격증 사본 등)에 대해 공고문에 기재된 반환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의 채용서류를 파쇄 또는 소각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공고문에 기재된 반환청구 가능일이 경과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개인정보가 포함된 불필요한 채용관련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구직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사실이 있다.

2.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 부적정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에서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상북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규정」제11조 제1항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절차는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4조 제1항에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담당하는 심사위원을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4조 제3항에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같은 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채용담당부서장 및 담당자는 심사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채용담당부서장이 아닌 내부 또는 외부위원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의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

그런데,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에서는 ♠♠♠♠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서류심사는 별도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지 아니하였고, 면접심사에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채용담당부서장인 ◈◈◈◈◈◈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남부건설사업소장**은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②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청구일이 경과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서류 등에 대하여 파기 조치 등을 하기 바랍니다. (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포장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부적정**
소 관 청	남부건설사업소
관 계 부 서	◁◁◁◁◁
내 용	

남부건설사업소에서는 관할 구역내 국지도 및 지방도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도로이용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포장 보수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같은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22-43호)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도급금액과 관급금액의 합계가 2천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포장공사를 단독으로 발주할 경우 아래 [표1]과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요율로 적용[4]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5]와 같이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표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및 공사종류 예시표

구 분 /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비율(%)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비율 (%)	기초액		
일반건설공사(갑)	2.93%	1.86%	5,349,000원	1.97%	2.15%
일반건설공사(을)	3.09%	1.99%	5,499,000원	2.10%	2.29%
중 건 설 공 사	3.43%	2.35%	5,400,000원	2.44%	2.66%
철도·궤도신설공사	2.45%	1.57%	4,411,000원	1.66%	1.81%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85%	1.20%	3,250,000원	1.27%	1.38%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5. 특수 및 기타건설 공사	□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다음의 공사(다른 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를 포함한다), 포장공사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2. 6. 2.] 별표1, 별표5 재구성
(2024. 7. 1일 이전 단독 포장공사 계약분 적용)

또한,「건설기술 진흥법」제49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24조 및 제148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불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한

4) 2024.7.1.일 이전 포장공사 계약에 적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국토부고시 2023-49호) 부칙에 따라 포장공사 등 전문공사가 토목공사로 적용

5) 1. 대상액이 5억 원 미만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한 금액
3.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제4조제1항의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 책정된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

사항이 없도록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서 건설공사의 품질 및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남부건설사업소 ◁◁◁◁◁에서는 2024. 7. 1일 이전에 포장공사로 단독 발주할 경우 원가계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로 적용하여 발주 하거나, 추후 설계변경 등의 조치하여 산업안전보건비 요율을 변경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2024. 7. 1일 이전 포장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특수 및 건설공사 요율이 아닌 일반건설공사(갑) 요율로 적용하여 0건 00,000,000원이 과다 계상되게 공사를 시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남부건설사업소장**은

지방0000 ▪▪▪, 지방0000 ▲▲▲에 대하여 「경상북도 자체감사 규칙」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주의** 처분하였으며,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공사 품질시업계획 등 부적정
소 관 청	남부건설사업소
관 계 부 서	♠♠♠, ◑◑◑◑◑
내 용	

남부건설사업소에서는 관할 구역내 도로, 교량건설, 지방도 유지 · 보수 및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교량개체 보수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대규모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제55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①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②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③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90조 제2항에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심사결과[6]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법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을

6) 1. 적정: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품질관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품질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거나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검사·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해야 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기성부분검사·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남부건설사업소에서는 총사업비 5억 이상, 전문공사 2억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금액에 품질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건설사업자 등이 건설공사 착공전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서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 확인을 받아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건설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는 000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품질시험계획의 대상이 되는 00개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았으며, 00개 건설공사는 품질시험계획서를 검토하여 서면으로 품질시험계획 적정성 여부를 통보하지 않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남부건설사업소장**은

지방0000 ◐◐◐, 지방0000 ▱▱▱, 지방0000 ▣▣▣, 지방00000◎◎◎에 대하여 「경상북도 자체감사 규칙」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주의** 처분하였으며,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